이사취임승인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누○○○○○	사건유형	기타
원 고	○○○	피 고	○○○○○○○○
판결선고일	2017. 12. 5.	비 고	
사건개요	원고는 학교법인 OOOO(이하 “OOOO”이라 한다) 법인재산 1/3 이상을 출연한 재산출연자이다. OOOO은 2009.8월부터 후임 이사 선출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으며, 2015.11.26.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OOOO 이사 선임 등의 OOOO의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5.11.26.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원고의 OOOO 운영권을 박탈하는 위법·부당한 결정이며, OOOO 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법하고 부당하게 결정된 이사후보들에 대한 피고의 이사취임승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및2016. 1. 20.에 한 이사선임처분 취소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2016. 3. 2.에 한 이사취임승인처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및 2016. 1. 20.에 한 각 이사선임처분을 취소한다. 또는 2016. 3. 2.에 한 이사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2016.1.4., 2016.1.20.의 이사선임통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선임 결정을 한 사실과 향후 이들에 대한 신원조사 실시 후 이사선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OOOO 측에 알리는 내용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존재함으로 각하기로 한다. 2016.3.2.의 이사취임승인처분취소 중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폭넓은 재량권 부여받고 있음. 따라서 심의원칙을 준수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오인하여 청문대상자를 잘못 선정하였는지 여부는 종전이사들의 대립, ■■■의 상속재산에 대한 문제, ■■■의 미망인 △△△의 유언(원고가 아닌 ▲▲▲가 ○○○○의 운영을 원함)을 고려하면 청문대상자 선정에 위법성이 부존재하다.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령상의 제한을 초과하여 선임되었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사 ▽▽▽와 친족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2006.1.경 ▼▼▼ 이사 취임시 원고 외에 ▲▲▲ 등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에 따르면 2명을 초과한 친족이 이사로 선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사 중 교육경력자 추천에 대하여 6인이 아닌 4인만 추천되어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사립학교법」제21조제3항은 이사 중 1/3 이상(3명 이상)이 교육경험이 있는 자라고 규정한 것이지 추천인원을 6인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선임 비율(▲▲▲ 측 인사 4인, 원고 측 인사 2인, 학내구성원 추천 인사 2인) 결정이 비합리적인지 여부는 기존 지배구도나 분쟁의 양상 및 이해관계인의 의사 등에 따른 적절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운영권 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들이 퇴임하면서 학교법인과 더 이상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또한 이사들 사이의 분쟁 등으로 이미 종전이사		

	취임승인 취소 당시부터 신성학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불합리한 운영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중 2016. 1. 4.자 및 2016. 1. 20.자 각 이사선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결 론	원고의 항소 중 피고가 2016. 1. 4. 및 2016. 1. 20.에 한 각 이사선임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